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 제한적 운영

- 11월 1일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 대상 2년간 한시적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일(금)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예외적 장애인활동지원(이하 가족급여)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활동지원사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던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자립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서비스로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지원서비스는 사회적 돌봄이라는 활동지원제도 취지에 비추어 가족이 아닌 타인인 활동지원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예외) 도서산간 거주로 활동지원사가 부족한 경우, 천재지변,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제3호)

이번에 시행되는 가족급여는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 하던 장애인에게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허용하여 한계점을 보완하고 돌봄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예외적인 허용이라는 점에서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2년간 시행하면서 제도의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가족급여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 또는 GAS 척도 30점 이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에 부합 하는 희귀질환자***로서 활동지원사 미연계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는 가족급여 대상으로 포함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 성인 426점 이상, 아동 327점 이상인 자

***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질환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가족은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활동지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11월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활동지원사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 활동지원사 교육을 2024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하면 된다.

*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총 50시간(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교육 이수하여야 함(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춘 경우 일부 감면)

가족급여 이용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작성한 활동지원사 미연계 사유서 등을 준비하여 읍·면·동으로 제출해야 하며, 보다 자세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코로나-19 기간 동안 운영했던 한시적 가족급여는 당초 2024년 10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용자의 활동지원사 연계 기간 확보 및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가족급여가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권이 있음에도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사회적 서비스로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 라고 밝혔다.

- <참고> 1.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세부 운영 규정
 2. 질의응답(Q&A)
 3. 관련 법령
 4.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개요

담당 부서	사회복지정책관실 장애인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모두순 (044-202-3340)
		담당자	사무관	김지윤 (044-202-3344)



참고1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세부 운영 규정

※ 별도 적시되지 않은 내용은 「2024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따름

- (대상자 기준; 최종증 발달장애인) GAS 척도 30점 이하의 자폐성 장애인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의 지적 장애인

※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는 별도 절차 없이 대상자로 인정

- (대상자 기준; 희귀질환자*) 희귀질환자 중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질환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 성인 426점 이상, 아동 327점 이상인 자

- (미연계 지속) 최초 연계 요청일 이후 60일 이상 미연계 지속, 사례관리 내용 등 미연계 사유 검토(활동지원사 미연계를 고의로 유도하는 경우는 가족급여 대상으로 부적격)

- 복수의 제공기관에 대한 수급자의 서비스 신청 여부 확인(예 : 거주지 관할 내 2개 기관 이상에 매칭 요청. 단, 지역 내 기관이 한 곳인 경우 적용하지 않음)

- (선정 절차) 지자체가 가족급여 이용자 선정, 운영에 주체로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이하 수자위)에 상정·심의

* (장애인활동법 제8조)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어 장애인단체 대표, 의료인 장애인 복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 인정 및 지원등급 등을 심의

- 수자위는 가족급여 대상 적격, 미연계 사유, 돌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가족급여 대상자 선정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별지 제7호 서식]“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는 이용자가 작성하여 읍면동으로 제출

- 활동지원기관에서 읍면동으로 미연계 사유서를 제출하여 이용자의 행정·심리적 부담 완화

- 가족급여 수급자는 1년 주기로 재승인 받아야 하며 급여내용, 서비스 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수자위의 재승인 필요

- 가족급여 이용하는 경우 급여량 50% 적용(활동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

- (가족 활동지원사) 가족도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춰야 하며 보수교육, 대면보고, 수시 보고 등 의무 준수
 -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고정된 1인의 가족이 활동지원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족급여를 이용하여야 함
 - 가족급여 재승인을 위해 1년간 2회 이상의 교육 이수 필요하며, 매달 권역별 대면 교육 기회 제공
 - 활동지원사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2024년 11월 신청자는 11월 30일까지 교육을 완료하면 됨

- (모니터링) 활동지원기관은 연계 요청 접수 내역 및 연계, 미연계 사유 등에 관한 기록을 관리, 연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 지자체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활동지원기관의 모니터링* 결과 확인, 가족급여 운영현황 등을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에 보고
 - * 이용자 만족도,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지 등 모니터링
 - 보건복지부는 전국 모니터링 체계구축, 반기별로 이용자 현황, 지역별 이용자 특성 등 파악

- (경과규정) 코로나19 한시적 가족급여 수급자는 활동지원사 연계 시도 및 돌봄공백 방지를 위하여 2개월간(24.11.1~24.12.31) 가족급여 계속 제공
 - 2025년 1월 이후 이용을 위해서는 코로나19 한시적 가족급여 수급자도 대상자 기준, 미연계 기간 등 충족하여 2개월 내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 2024.11.1.~12.31일 간 신규 신청자는 신청 시점 이전 60일 이상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다면 미연계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봄
 -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제21조 1~3호에 따른 도서산간 거주로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경우, 천재지변, 감염 등으로 인한 가족급여는 변동 없음(수자위 상정·심의 거치지 않음)

<신청 관련>**Q1****서비스 이용 가능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따른 예외적 가족급여의 대상자는 GAS 척도 30점 이하, 지능지수 35점 이하의 최종중 발달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가산 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자입니다. 또한, 활동지원사 미연계가 60일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책임 및 가족의 직접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활동지원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어려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지원인력의 기피 현상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대상자를 설정하였습니다.

Q2**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가족급여 이용자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 네. 코로나19 한시적 가족급여 이용자도 대상자 기준, 미연계 기간 등을 충족하여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19 한시적 가족급여는 2024년 10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활동지원사 연계 시간 확보와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서 2개월간('24.11.1~'24.12.31)은 가족 급여를 계속 제공합니다.

Q3**활동지원사 매칭이 어려웠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가족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 네. 최초 활동지원사 연계 요청 시점으로부터 가족급여 신청 시점까지 60일 이상 활동지원사 연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활동지원기관이 미연계 사유서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단,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지난 60일 이상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미연계로 간주합니다.

<제도 이용 관련>**Q4****가족급여 제공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①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 혈족의 배우자, ③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입니다.

Q5

가족도 활동지원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요?

- ☞ 네. 활동지원 서비스는 활동지원사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하여 제공되어야 하므로 가족은 활동지원사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활동지원사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2024년 11월 신청자는 11월 30일까지 교육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Q6

가족인 활동지원사도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나요?

- ☞ 네. 고정된 1인의 가족이 활동지원인력으로 등록을 하고, 관할 내 활동지원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Q7

가족급여 이용시 이용량은 어떻게 되나요?

- ☞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 지원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량이 50% 감산되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7-1

가족급여 제공인력도 수입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를 하나요?

- ☞ 네. 활동지원인력도 활동지원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 및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합니다.

Q8

가족급여 이용 중에도 매월 활동지원사 매칭을 위해 노력해야 하나요?

- ☞ 예 그렇습니다. 활동지원은 자격이 있는 활동지원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원칙이며, 돌봄서비스 공백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가족급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급여를 이용하는 중에도 매월 활동지원기관에 연계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활동지원기관은 연계 요청 접수 내역, 연계 시도 이력, 미연계 사유 등에 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경과 규정 관련〉

Q9

코로나19 한시적 가족급여 이용은 10월 31일자로 종료되나요?

- ☞ 아닙니다. 활동지원사 연계 시간 확보와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서 2개월간 ('24.11.1~'24.12.31)은 가족급여를 계속 제공합니다.

〈향후 계획 관련〉

Q11

가족급여는 2년 후에 종료되나요?

- ☞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따른 가족급여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시행 2년간 제도 모니터링을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은 활동지원사의 연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활동지원사 매칭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에 도움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

①~② (생략)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 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자가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급자가 섬, 외딴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4. 수급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33조(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 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① (생략)

②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수급자가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③~④ (생략)

- (목적) 혼자서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 (지원대상)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수급자격(42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 ('11년) 1급 → ('13년) 1~2급 → ('15.6월) 1~3급 → ('19.7월) 장애등급 무관
 -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제도도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11.1월) 및 시행령('11.7월), 시행규칙('11.8월) 공포, '11.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 * 노인장기요양 도입 시,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을 마련하도록 국회 부대결의('07.4월)
- (급여량) 활동지원 급여(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정) 936천원 ~ 7,475천원 + 특별지원 급여(요건 충족 시 중복지원 최대 6개월) 313천원 ~ 1,247천원
- (급여종류)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 (급여사용) 수급자는 활동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 서비스 시작·종료시 바우처 카드로 급여비용 결제
 - (활동지원기관) 지자체의 장이 기관의 지역적 분포, 수급자 수, 적정 공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종류별로 지정
 - (활동지원인력) 활동보조는 교육(50시간)을 이수한 활동지원사에 의해 제공되며,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제공